

결 정 문

사건번호: KR-1400096
신청인: 밀리폴 (MILIPOL)
피신청인: 오준호 (Jun-ho, OH)

1. 당사자 및 분쟁 도메인이름

신청인 : 밀리폴 (MILIPOL)

프랑스, 파리, 75002 뤼 노트르담 데 빅토리 9

대리인 : 김혜리 변리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45번지 삼안빌딩 9층

국제특허 바른

피신청인: 오준호(Jun-ho, OH)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APEC로 55 벅스코 제1전시장

3층 360호

분쟁 도메인이름은 "(1)milipolkorea.com, (2)milipolkorea.org, (3)milipolkorea.net, (4)milipolkorea.com, (5)milipolkorea.net, (6)milipolkorea.org"이며, 피신청인에 의해 (1),(2),(3)은 (주)후이즈(서울시 구로구 구로3동 187-10 코롱싸이언스밸리 1차 10층)에, (4),(5)는 (주)코리아서버호스팅(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710-1 번지 SK 브로드밴드

IDC 센터)에, (6)은 아이피머리코리아(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대우디오빌 플러스 1623호)등록되어 있다.

2. 절차의 경과

신청인은 2014. 6. 17. 아시아도메인이름분쟁조정센터(ADNDRC) 서울사무소(이하 ‘센터’ 라고 함)인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도메인이름의 이전을 구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014. 6. 23. 센터는 등록기관에게 등록인의 정보를 요청하는 전자우편을 발송하였고 등록기관은 2014. 6.23, 6.26 센터에 등록인의 확인 등 세부사항을 확인해주었다.

2014. 6. 26. 센터는 분쟁해결신청서가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이하 ‘규정’ 이라 함),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 규정을 위한 절차규칙(이하 ‘절차규칙’ 이라 함), 통일도메인이름 분쟁해결규정을 위한 아시아 도메인이름 분쟁해결센터 보충규칙(이하 ‘보충규칙’ 이라 함)에 따른 형식적 요건의 충족 여부를 점검하였다.

2014. 7. 2. 센터는 규칙 제2조 (a) 및 제4조 (a)에 따라 분쟁해결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전자우편을 통하여 피신청인에게 발송하면서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마감기일이 2014. 7. 22.임을 통지하였다. 또한 같은 날 등기우편을 통하여 절차개시 통지 및 신청서 등 서류를 전자우편으로 발송하였음을 통지하였다.

2014. 7. 22. 피신청인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2014. 7. 24. 센터는 피신청인에게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을 통지하였다.

2014. 7. 28. 센터는 이덕재 위원에게 조정인 선임을 요청하였고, 2014. 7. 30. 조정인으로서의 승낙 및 중립성과 독립성의 선언을 확인 받아 조정부를 구성하였다.

3. 사실관계

신청인은 프랑스의 경제적 이익집단으로서 1995년부터 '방위산업 및 군사 시스템' 등과 관련된 박람회를 개최하면서 자신의 상호 'MILIPOL'을 박람회의 명칭으로 사용해 왔다. 그리고 'MILIPOL'을 핵심요부로 하는 표장을 국제분류 제35류 '홍보목적의 박람회 조직업'과 제41류 '안전시스템 교육 목적의 박람회 조직업' 등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여 1995년 2월 13일에 프랑스에서 최초로 상표등록출원하여 등록하였고, 독일, 베네룩스, 스페인, 이탈리아, 스위스, 중국, 미국, 러시아, 헝가리, 폴란드, 미국 등 다수의 국가에서도 등록하여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도메인이름 'milipol.com', 'milipol.usa', 'milipol.org', 'milipol.net', 'milipol.mobi' 등을 등록 하여 보유하고 있으며 UDRP 도메인이름 분쟁조정절차를 통해서 'milipolusa.com', 'milipolest.com'을 제3자로부터 이전 받았다.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들을 등록하여 분쟁도메인이름 6건 각각을 주소로 하는 웹사이트에 접속하면 모두 www.milipolkorea.com을 주소로 하는 웹페이지로 연결되도록 하고, 위 웹페이지는 2014년 4월 16일부터 18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 '2014 대한민국 하이테크방위사업전'을 안내하는 홈페이지 역할을 하였고, 'MILPOL'을 위 행사를 주관하는 자를 나타내는 표지의 핵심요부로 한 표장을 위 웹페이지의 좌측 상단에 표시하고 있다.

4. 당사자들의 주장

A. 신청인

신청인은 1) 분쟁도메인이름들은 신청인의 상표 'MILIPOL'과 유사하며, 2)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한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므로, 3)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들을 등록한 것은 신청인의 등록상표 'MP MILIPOL'의 명성에 편승하기 위한 부정한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며, 4) 따라서 분쟁도메인이름들은 UDRP 제4조 (a)에 해당하므로 신청인에게 이전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B. 피신청인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5. 검토 및 판단

규정 제4조 (a)항에 따르면 신청인은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입증해야 한다.

(i) 신청인이 권리를 갖고 있는 상표 또는 서비스표와 등록인의 도메인이름이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는 것,

(ii) 등록인이 그 도메인이름의 등록에 대한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는 것, 그리고

(iii) 등록인의 도메인이름이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 및 사용되고 있다는 것.

따라서 상기의 사항과 관련하여 당사자가 주장하는 논점을 판단 하면 다음과 같다.

A. 상표·서비스표와 본 건 분쟁 도메인이름의 유사

분쟁도메인이름들에서 gTLD임을 나타내는 확장자 'com', 'org', 'net' 및 '대한민국'을 나타내는 'korea'는 위 웹사이트 운영주체를 나타내는 표지로서 인식되기 어렵다. 따라서 이들을 제외한 'milipol'과 'milpol'이 위 도메인이름들을 주소로 하는 웹사이트의 운영주체를 나타내는 표지로 인식된다. 그런데

'milipol'은 신청인의 상표의 핵심요부인 'MILIPOL'과 동일하며, 'milpol'은 'MILIPOL'에서 네 번째 영문자 'I'를 빼는 것에 불과하여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분쟁 도메인이름과 신청인의 상표는 유사하다.

B. 피신청인의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

피신청인은 이 사건에 대하여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으며, 달리 피신청인이 이 사건 도메인이름의 등록이나 사용에 정당한 권리나 이익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C. 피신청인의 부정한 목적

앞에서 본 바와 같이 'milipol'은 신청인의 상호이고 프랑스, 독일, 베네룩스, 스페인, 이탈리아, 스위스, 중국, 미국, 러시아, 헝가리, 폴란드, 미국 등 다수의 국가에서 등록된 상표의 핵심요부이며 1995년부터 개최해 온 박람회의 명칭이다. 그런데 이와 극히 유사한 분쟁대상도메인이름들을 피신청인이 우연히 등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여기에 더하여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들을 주소로 하는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신청인이 개최해 온 ‘방위산업 및 군사 시스템’ 등과 관련된 박람회와 극히 유사한 ‘2014 대한민국 하이테크 방위사업전’의 홈페이지로 사용하면서 그 좌측상단에 'MILPOL'을 핵심 출처표지로 사용한 점을 감안하면, 피신청인의 분쟁도메인이름 등록 및 사용에는 신청인의 상표의 명성에 편승하고자 하는 부정한 목적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6. 결정

위와 같이 검토한 결과, 본 조정부는 '규정' 제4조 (i)항 및 '절차규칙' 제15조에 의하여,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피신청인에

대하여 분쟁도메인이름 <milipolkorea.com, milipolkorea.org,
milipolkorea.net, milpolkorea.com, milpolkorea.net, milpolkorea.org>을
이전할 것을 결정한다.

이덕재
1인 조정인

결정일: 2014년 8월 12일